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97

발의연월일: 2025. 5. 26.

발 의 자:최민희·정동영·김 현

노종면 • 박지원 • 이병진

박해철・황정아・김 윤

송재봉·김문수·이광희

권향엽 · 조인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 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연방법원 배심평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반독점법(Cartwright Act)위반이라고 사실 확정하였고,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4년 4월 11일)에서 구글의 내부문서를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강제 결합행위가 없었다면 기껏 최대 10% 인앱 결제 수수료를받았을 것이라고 드러났으나, 국내 앱 마켓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약 5배에 달하는 부당한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의 국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업상 보복적 수단으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 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수수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및 데이터 처리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제한 또는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12(앱 마켓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앱 마켓사업자가 제22 조의9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그 앱 마켓사업자는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과 증거조

사의 결과를 종합한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 5. 앱 마켓사업자의 재산상태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 · 제3항 · 제5항,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 · 제5항, 제32조의15제2항 · 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조치명령 등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신고인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	l무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② (생 ^리	· 및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수수료, 앱마켓 노출, 검색, 광
	고 및 데이터 처리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제한 또는 변경하
	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12(앱 마켓사업자의 손
	해배상 책임) ① 앱 마켓사업
	자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함
	으로써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

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을 지며, 그 앱 마켓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 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사실 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당 사<u>자의 변론과 증거조사의 결</u> 과를 종합한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 액을 산정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모바일콘 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앱 마켓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 5. 앱 마켓사업자의 재산상태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 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 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 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 ·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 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 제2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 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일부개정법률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 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 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 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 ·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 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 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게 하고, 상당한 기간 내 에 조사결과(조치명령 등 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신 고인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